

기안용지

분류기호 문서번호	고기 33100-	(전화: 735-6716)	특별취급
보존기간	영구·준영구. 10. 6. 3. 1.	시 장	
수신처 보존기간		사 2/3	
시행일자	88. 2.		
보조 기관	고용국장	협 조 기 관	법무담당관
	고용기획과장		
	고용운영계장		
기안책임자	최영웅		발 송 인
경유 수신 참조	과 안 참 조	의견 반	
제 목	고용운영평가 실시예(남(하)부(총)안) 임명하고		
(계 1안)			
수신 :	내부근처		
제 목 :	남(하)부		
1. 도시고용강화추진법(86.12.31) 제11조 제 1항 단서 시행령			
(87.7.24) 제9조 제1항 예외의 고용운영평가제의 적용을 위한 도시고용의 강화			
지역 구분 조항안을 폐지와 같이 임명 예고 하고자 합니다.			
첨부 :	공고안 1부.		
(계 2안)			
수신 :	공보관	발신 :	고용국장



기안용지

본류기호 문서번호	고기 33100-	(전화: 735-6716)	특별취급
보존기간	영구·준영구. 10. 6. 3. 1.	시 장	
수신처 보존기간		사 2/3	
시행일자	88. 2.		
보조 기관	고용국장	협 조 기 관	법무담당관
	고용기획과장		
	고용운영계장		
기안책임자	최영웅		발 송 인
경유 수신 참조	과 안 참 조	의견 반	
제 목	고용운영평가 실시역(남한부흥안) 임명하고		
(계 1안)			
수신 :	내부근처		
제 목 :	남한부		
1. 도시고용강화추진법(86.12.31)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			
(87.7.24) 제9조 제1항에 의거 고용운영평가제외 적용을 위한 도시고용의규			
제외 구분 조항안을 검토한 결과 같이 임명 하고 하기로 합니다.			
첨부 :	공고안 1부.		
(계 2안)			
수신 :	공보관	발신 :	고용국장



제목 : 갑은건

1. 토시고통경비후견법(86.12.31) 제17조 및 같은법 시행령

(87.7.24) 에 의거 고통영양평가제의 적용을 위한 토시 퇴직자후견구분 조제

공고안을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첨부 : 공고안 1부. 끝.

(계 3안)

수신 : 법무담당관

발신 : 고통기획과장

제목 : 갑은건

1. 고기 33100-108 (88.2.10)호와 관련임.

2. 고통영양평가제 적용을 위한 토시 퇴직 외과직역 구분 조제안

을 인편 예고 하시기 통보합니다.

첨부 : 공고안 1부. 끝.

- 영등포지역 : 여의도및 경인로 . 선유로 . 당산로 . 노들길을 경계로 하는 내부지역과 경계가로에 인접하는 외곽부지 .
- 영등지역 : 입구정로 . 언주로 . 역삼로 . 효령로 . 반포로 . 서초로 . 경부고속도로를 경계로하는 내부지역과 경계가로에 인접하는 외곽부지 .
- 잠실지역 : 올림픽로 . 석촌호수길 . 삼학사길 . 잠실길 . 올림픽로 . 송파대로 . 신천동 7 번지 1 1 호 , 7 번지 8 호 , 1 1 번지 7 호를 잇는도로 . 올림픽로 . 위례성길 백재고분로를 경계로하는 내부지역과 경계가로에 인접하는 외곽부지 .
- 천호지역 : 선사로 . 구천면길 . 천호동 4 2 1 번지와 성내동 4 5 8 번지를 잇는도로 둔촌로 . 성내동 4 1 5 번지와성내동 1 0 8 번지를 잇는도로 . 풍납로를 경계로하는 내부지역과 경계가로에 인접하는 외곽부지 .
- 정랑리지역 : 제기로 . 배봉로 . 하정로 . 정릉천을 경계로하는 내부지역과 경계가로에 인접하는 외곽부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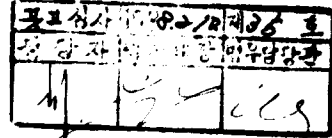
나 . 외곽지역 : 도심지역을제외한 지역 .

3 . 의견제출

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있는단체 또는 개인은 1 9 8 8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 (참조 : 교통기획과장)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.

- 가 . 예고사항에대한 의견 (찬 , 반여부와 그사유)
- 나 . 성 명 (단체의경우 단체명과대표자명) , 주소 , 전화번호
- 다 . 기타상세한 내용은 서울시교통기획과 (7 3 5 - 6 7 1 6)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.

조 례 안 입 법 예 고



○ 서울특별시 공고 제 호

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 11조 및 동법시행령 제 9조 제 1항에 의한
교통영향평가제의 적용을 위하여 도심 및 외곽지역 구분을 조례로 제정함에
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법령안 입법
예고에 관한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.

1988. 2. .

서울특별시 장

교통영향평가 실시에 관한 조례(안) 입법예고

1. 제정취지

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 11조 및 동법시행령 제 9조 제 1항에 의거
교통영향평가대상 규모를 도심과 외곽지역으로 구분하여 적용토록 규정하고
있어 이에 따라 도심지역을 조례로 제정코자 함.

2. 주요내용 (도심 및 외곽지역구분)

가. 도심지역

- 4대문 주변지역 : 사직로, 율곡로, 왕산로, 다산로, 왕십로, 퇴계로
의주로를 경계로 하는 내부지역과 경계가로에 인접하는 외곽부지.
- 신촌지역 : 경의선철도, 경의선철도와대흥로를 잇는도로, 대흥로, 용산선철도,
양화로 및 연희로를 경계로하는 내부지역과 경계가로에 인접하는 외곽부지